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議案 番 號	31
-----------	----

提出年月日：2000. 6. .
提出者：政 府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勤勞者에게 최저수준의 賃金を 보장하기 위하여 施行하고 있는 最低賃金制의 적용대상을 종전에는 상시 5人 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低所得 勤勞者의 생활 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은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과 家事使用人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第2項중 “最低賃金審議委員會”를 “最低賃金委員會”로 한다.

第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의2(最低賃金の 적용을 위한 賃金の 換算) 最低賃金の 적용대상 이 되는 勤勞者の 賃金を 정하는 단위기간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の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당해 勤勞者の 賃金を 最低賃金の 단위기간에 맞추어 換算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第9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중 “最低賃金審議委員會”를 각각 “最低賃金委員會”로 한다.

第4章의 題目 “最低賃金審議委員會”를 “最低賃金委員會”로 한다.

第12條의 題目중 “最低賃金審議委員會”를 “最低賃金委員會”로 하고, 同條중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最低賃金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로 한다.

第13條의 題目 및 本文, 第14條의 題目·第1項 및 第2項, 第1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6條第1項 및 第2項, 第17條, 第18條, 第19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第20條第1項, 第21條 및 第22條중 “審議委員會”를 각각 “委員會”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새로 적용되는 事業에 관한 적용례) 이 法の 施行으로 새로이 이 法の 적용대상이 되는 事業에 소속된 勤勞者의 賃金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 이후에 행한 勤勞에 대한 賃金分부터 最低賃金を 적용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3條(適用範圍) ①이 법은 勤勞基 準法の 適用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事業의 종류·規 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 하는 事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第3條(適用範圍) ①이 법은 勤勞者 를 사용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 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 용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과 家事使用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現行과 같음)</p>
<p>第4條(最低賃金の 決定基準과 區分)</p> <p>① (생략)</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種類別 구분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審 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정한다.</p> <p><新 設></p>	<p>第4條(最低賃金の 決定基準과 區分)</p> <p>① (現行과 같음)</p> <p>②----- ----- -----最低賃金委員會----- -----</p> <p>第5條의2(最低賃金の 적용을 위한 賃金の 換算) 最低賃金の 적용대 상이 되는 勤勞者の 賃金を 정 하는 단위기간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の 단위기 간과 다른 경우에 당해 勤勞者 의 賃金を 最低賃金の 단위기간 에 맞추어 換算하는 방법에 관 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8條(最低賃金の 決定) ①勞動部 長官은 매년 8月 5日까지 最低 賃金を 決定하여야 한다. 勞動部</p>	<p>第8條(最低賃金の 決定) ①----- ----- -----</p>

長官이 最低賃金を 決定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審議를 요청하고,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を 決定하여야 한다.

②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으로부터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하여 제출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を 決定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20日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 10日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再審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期間內에 이를 再審議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最低賃金委員會-----
-----最低賃金委員會-----

-----.

② 最低賃金委員會-----

-----.

③-----
-----最低賃金委員會-----

-----最低賃金委員會-----

員會-----

-----.

④ 最低賃金委員會-----

-----.

⑤ 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議를 함에 있어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초의 最低賃金案을 再議決한 때에는 그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第9條(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

① 勞動部長官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로부터 最低賃金案을 제출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第8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 最低賃金案의 再審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를 要求한 最低賃金案에 대하여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再審議·議決된 最低賃金案이 제

⑤ -----最低賃金委員會-----

第9條(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

① -----最低賃金委員會-----

② (現行과 같음)

③ -----最低賃金委員會-----

④ -----最低賃金委員會-----

출될 때까지는 最低賃金を 決定할 수 없다.

⑤ (생략)

第4章 最低賃金審議委員會

第12條(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設置)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 기타 最低賃金에 관한 重要사항의 審議를 위하여 勞動部에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13條(審議委員會의 機能) 審議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수행한다.

1. ~ 4. (생략)

第14條(審議委員會의 構成등) ①審議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이하 “公益委員”이라 한다) 각 9人으로 구성한다.

②審議委員會에 2人의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된다.

③ ~ ⑥ (생략)

第15條(委員長과 副委員長) ①審議委員會에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둔다.

-----.

⑤ (現行과 같음)

第4章 最低賃金委員會

第12條(最低賃金委員會의 設置)-----

-----最低賃金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
-----.

第13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
-----.

1. ~ 4. (現行과 같음)

第14條(委員會의 構成등) ①委員會-----

-----.

②委員會-----
-----.

③ ~ ⑥ (現行과 같음)

第15條(委員長과 副委員長) ①委員會-----
-----.

②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公益委員
중에서 審議委員會가 選出한다.

③委員長은 會務를 統轄하며 審
議委員會를 代表한다.

④ (생략)

第16條(特別委員)①審議委員會에
는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중
에서 3人이내의 特別委員을 둘 수 있
다.

②特別委員은 審議委員會의 會
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③ (생략)

第17條(會議) ①審議委員會의 會議
는 勞動部長官이 召集을 요구하
는 경우, 在籍委員 3分の 1이상
이 召集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委員長은 審議委員會의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③審議委員會의 會議는 이 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審議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을 함에 있어서는 勤
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 각 3分の

②-----
-----委員會-----.

③-----委
員會-----.

④ (現行과 같음)

第16條(特別委員) ①委員會-----

-----.

②-----委員會-----
-----.

③ (現行과 같음)

第17條(會議) ①委員會-----

-----.

②-----委員會-----
-----.

③委員會-----

-----.

④委員會-----

1이상의 出席이 있어야 한다. 다만,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正當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8條(意見聽取) 審議委員會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勤勞者와 使用者 기타 關係인의 의견을 聽取할 수 있다.

第18條(意見聽取) 委員會-----

-----.

第19條(專門委員會의 設置) ①審議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事業의 種類別 또는 特定事項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9條(專門委員會의 設置) ①委員會-----

-----.

②專門委員會는 審議委員會의 權限의 一部를 委任받아 第13條各號의 機能을 수행한다.

②-----委員會-----

-----.

③ (생략)

③ (現行과 같음)

④第14條第3項 내지 第6項, 第15條,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은 專門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 規定중 “審議委員會”는 이를 “專門委員會”로 본다.

④-----

-----“委員會”-----
-----.

第20條(事務局) ①審議委員會에 그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第20條(事務局) ①委員會-----

-----.

<p>② · ③ (생략)</p> <p>第21條(委員의 手當등) <u>審議委員會</u> 및 專門委員會의 委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p> <p>第22條(運營規則) <u>審議委員會</u>는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u>審議委員會</u> 및 專門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p>	<p>② · ③ (現行과 같음)</p> <p>第21條(委員의 手當등) <u>委員會</u> ----- ----- -----.</p> <p>第22條(運營規則) <u>委員會</u>----- ----- -----<u>委員會</u>----- ----- -----.</p>
--	--